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침

제정 2021. 03. 17.

개정 2022. 12. 28.

제 1 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진흥원)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위원”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진흥원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2. “사용자위원” 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진흥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간사” 라 회의록 작성 및 제반 사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적용범위)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노사합의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2 장 위원회의 구성

제4조(위원회의 설치) 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 24조제1항 에 따라 위원회 의무 운영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이상 9명 이내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이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며 총 8~18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근로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 - 1. 근로자대표 1명(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)
 - 2.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(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 되어 있는 경우)
 - 3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
- ③ 사용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2.12.28.>
 - 1. 기관장 1명
 - 2. 안전관리자 1명
 - 3. 보건관리자 1명(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)
 - 4. 산업보건의 1명(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함)
 - 5. 기관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
-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.
 - 1. 위원 중에서 호선
 - 2.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
- 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안전보건 주관부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담당자로 한다.

제 3 장 위원회의 운영

- 제7조(소집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한다.
- 1. 정기회의: 매분기 위원장 소집
 - 2. 임시회의: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
-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 <조항삭제 2022.12.28.>

제8조(회의운영) ①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에 불참한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 위원의 불참 시에는 그 위원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회에 대리 참석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 참석하는 자는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.

④ 위원회 회의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에서 주관한다.

제9조(의안수집) 위원회 위원은 근로자에게 의안제출을 권장하고, 평소 적극적인 의안수집 활동 등을 전개함으로써 전체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안토의 등) ① 위원장은 모든 위원이 의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후에 심의·의결 또는 결정하도록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의 심의·의결·결정사항은 법과 법에 따른 명령, 단체협약,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③ 당연직 사용자 위원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.

1.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해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지도·조언
2. 직업성 질환 또는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
3. 위험기계·기구에 대한 자체검사 결과 등에 대한 의견
4.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방법
5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사항
6. 규정 및 취업규칙 중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

7. 그 밖의 사업장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제11조(심의·의결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.

〈개정 2022.12.28.〉

1.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4.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5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6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
7.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8.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·기구·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
9. 그 밖의 사업장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

제12조(의결방법) ①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설치된 중재기구에 회부하거나 동 위원회에서 위임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여 해결한다.

1. 가부동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
2.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

③ 위원은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사용자는 위원회 의안 부결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.

⑤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하여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진단기관

2. 작업환경측정기관
3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4.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중재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(회의록 작성 및 보존)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개최일시 및 장소
 2. 출석위원
 3. 심의 내용 및 의결·결정사항
 4. 그 밖의 토의사항
-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,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제14조(결과통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·결정된 사항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,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,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심의·의결·결정 사항의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을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등 그 이행상태를 계속 확인·점검하여야 한다.

제 4 장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의 운영

제15조(실무위원회 운영)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(이하 실무위원회)를 운영한다.

제16조(실무위원회 구성) 실무위원회는 사용자 실무위원 및 근로자 실무위원 2~3인으로 구성한다.

1. 사용자 실무위원: 안전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 부서의 담당자 등
2. 근로자 실무위원: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자

3. 간사: 산업안전보건업무 전담부서의 업무 담당자

제17조(운영 및 기록)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제3장 위원회의 운영에 준하여 운영하고 기록한다.

부 칙(2021.3.17.)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12.28.)

이 지침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 (제5조 관련)

20__년 제00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

제 안 자	<위원장>
제안년월일	20__. __. __.

한국콘텐츠진흥원
산업안전보건위원회

보고/의결 안건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전분기 의결사항 추진보고

[illegible]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/보고 안전

안전번호 제1호 <안전명>

<안전세부내용>

[별표2] (제13조 관련)

20__년 제__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					
위 원 장					
회 의 일 시					
회 의 장 소					
참여위원					
사용자위원			근로자위원		
직위	성명	서명	직위	성명	서명
회의결과					
NO.	안전명	회의내용		담당자	비고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		이하여백			
2000년 00월 00일					
사용자대표				(인)	
근로자대표				(인)	

[별표3] (제9조 관련)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 제출	
위 원 회 명	20__년 제__차 산업안전보건회의
소 속 부 서	<소속부서>
성 명	(서명)
제 출 안 건	
내 용	비 고
위 안건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제출합니다.	
20 . . .	

[별표4] (제7조, 제8조 관련)

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임장

위원회명		20__년 제__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
대 리 인	소 속 부 서	
	성 명	(서명)

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근거하여
20__년 제__차 _____위원회 대리인으로 선임하고
(사용자위원, 근로자위원)으로서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.

20 . . .

위임자 : (서명)

관련 근거조항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제37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등) ③ 근로자대표, 명예산업안전감독관, 해당 사업의 대표자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[별표5] (제16조 관련)

2000년 제00차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회의자료					
1. 회 의 일 시					
2. 회 의 장 소					
전분기 의결사항 추진현황 보고					
의결(보고)사항	주요결과	추진일정	담당부서	추진현황	위원회
1) 안전기본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					
회의안전	안전설명				
1)사무실 소음 방지에 관한 사항	<예시: 사무실 소음 법적기준치는 00데시벨인데, 초과됨, 소음건강장애 방지 조치필요>				
<안전>					

[별표6] (제17조 관련)

2000년 제00차 산업안전보건 실무위원회 회의록		
회 의 일 시		
회 의 장 소		
참 석 위 원	사용자위원: 근로자위원:	
회의결과		
구분	내용	
보고/의결		
참석 위원	사용자위원	근로자위원
	_____ (인)	_____ (인)
	_____ (인)	_____ (인)
	_____ (인)	_____ (인)